

평창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7. 4. .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점·사용료는 농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징수시기도 농지세 납부시기로 되어 있어 작물의 종류와 작황에 따르는 농지소득금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작목별 소득금액의 현격한 차이로 인한 형평성 결여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어
- 「강원도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부과하는 하천점용료와 같이 인근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토록 개정하고 징수시기도 통일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띠어쓰기에 맞게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로 함.
- 나. 별도로 정한 농경 목적의 점용료 징수시기를 삭제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전년도 11월에 익년도 요금을 징수하던 것을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하도록 함. (안 제5조 내지 제6조)
- 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사무에 대한 읍·면장 위임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
- 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점용료 부과는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 금액의 5/100로 산정” 하던 것을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 분의 1”로 점·사용료를 산정하도록 함.(안 별표1)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별첨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다. 입법예고 : 실시결과(07.1.19 ~ 2.12), 의견제출 없음
- 라. 기타 참고사항
 - 도내 시군 조례개정 추진상황
 - 현행(2005년도분)과 개정후(2006년도분) 점·사용료 비교표

평창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표1의 제2호 토지(소하천 등의 부지)의 점용란의 산정기준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별표1의 비고 제1호의 본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하고, “동법 제10조제2항”을 “동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1의 비고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5조의2 및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제3조제5항·제4조·제7조중 “소하천정비법”을 “「소하천정비법」”으로 하고, 제9조중 “평창군세부과징수규칙”을 “「평창군세 부과징수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u></p> <p>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생략) <u>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u> <u>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른다.</u></p> <p>제6조(징수) ① ~ ② (생략) <u>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당해 허가년</u> <u>도분은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u> <u>의 연도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u> <u>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u></p> <p>④(생략)</p> <p><u>제8조(징수사무의 위임)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u></p>	<p><u>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u></p> <p>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현행과 같음) <삭제></p> <p>제6조(징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당해 허가년</u> <u>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u> <u>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u></p> <p>④(현행과 같음)</p> <p><삭제></p>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산 정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10px;">2. 토지(소하천 등 부지)의 점용</td> <td> <p><u>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u></p> <p>(1)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u>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u> <u>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u> <u>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u> <u>금액의 5/100</u></p> <p>(2) 미식부지 및 기타작물의 경우 <u>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u> <u>인근지 토지가격의 0.8/100</u></p> </td></tr> </tbody> </table>	구 분	산 정 기 준	2. 토지(소하천 등 부지)의 점용	<p><u>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u></p> <p>(1)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u>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u> <u>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u> <u>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u> <u>금액의 5/100</u></p> <p>(2) 미식부지 및 기타작물의 경우 <u>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u> <u>인근지 토지가격의 0.8/100</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산 정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10px;">2. 토지(소하천 등 부지)의 점용</td> <td> <p><u>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u></p> <p><u>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u> <u>토지가격의 100분의 1</u></p> </td></tr> </tbody> </table>	구 분	산 정 기 준	2. 토지(소하천 등 부지)의 점용	<p><u>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u></p> <p><u>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u> <u>토지가격의 100분의 1</u></p>
구 분	산 정 기 준								
2. 토지(소하천 등 부지)의 점용	<p><u>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u></p> <p>(1)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u>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u> <u>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u> <u>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u> <u>금액의 5/100</u></p> <p>(2) 미식부지 및 기타작물의 경우 <u>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u> <u>인근지 토지가격의 0.8/100</u></p>								
구 분	산 정 기 준								
2. 토지(소하천 등 부지)의 점용	<p><u>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u></p> <p><u>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u> <u>토지가격의 100분의 1</u></p>								

현 행	개 정 안
<p>※ 비고</p> <p>1. 토지가격은 <u>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u>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u>동법 제10조제2항</u>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단서 생략)</p>	<p>※ 비고</p> <p>1. ----- 「<u>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u>」 제3조제1항 ----- ----- <u>동법 제9조제2항</u> ----- ----- -----.(현행과 같음)</p>
2. (생략)	2. (현행과 같음)
<p>3. 소하천 등의 점용면적이 1m²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m²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삭제></p>
<p><신설></p>	<p>4.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5조의2 및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p>

【별첨】

관계법령 발췌

□ 하천법

제38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사용료,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로 되어 있는 지방2급 하천의 하천구역안에서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징수방법 등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 ③(생략)

[별표 1] 2. 토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

□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유재산법

제25조의2(사용료의 조정) ① 관리청은 동일인(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자는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행정재산등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등이 용도폐지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사용료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의 산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12.31]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사용료의 조정)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되는 당해 연도의 사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4조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제2차연도 이후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사용료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8.14>

[본조신설 2000.7.27]

[별 표] <신설 2000.7.27>

행정재산등의 사용료의 조정(제27조의2관련)

번호	산출사용료의 증가율	납 부 할 사 용 료
1	10퍼센트 이상 ~ 20퍼센트 미만	전년도사용료 + [전년도사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00/1,000}]
2	20퍼센트 이상 ~ 50퍼센트 미만	전년도사용료 + [전년도사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 × 100/1,000}]
3	50퍼센트 이상 ~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사용료 + [전년도사용료 × {16/100 + (증가율 - 50/100) × 60/1,000}]
4	100퍼센트 이상 ~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사용료 + [전년도사용료 × {19/100 + (증가율 - 100/100) × 30/1,000}]
5	200퍼센트 이상 ~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사용료 + [전년도사용료 × {22/100 + (증가율 - 200/100) × 10/1,000}]
6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사용료 + [전년도사용료 × {25/100 + (증가율 - 500/100) × 5/1,000}]

【별첨】

강원도 시·군별 조례개정 추진상황

구분(조례개정여부)	시·군별	비고
개정 완료(5)	원주시(2005. 4.15) 영월군(2006. 1. 6) 횡성군(2005. 7.26) 홍천군(2005.11.15) 고성군(2005.10.25)	
미 개정(12)	춘천시, 강릉시 태백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